

직제규정

제정 2009.01.01

25차 개정 2025.06.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의 직제는 법령, 학교법인우송학원 정관, 본 대학 학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및 업무의 위임)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과 업무의 위임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2장 편 제

제4조(기구)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본 대학에는 총장과 부총장, 학사1부총장, 학사2부총장,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을 둔다. 단, 명예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외부총장, 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 2017.1.1., 2017.9.15., 2020.08.24., 2021.2.22., 2022.2.28., 2022.10.4., 2025.6.16.>

2. 본 대학에는 교육혁신본부, 교무처, 입학처, 총무처 등의 행정부서를 둔다. <개정 2016.7.1., 2017.9.15., 2020.8.24., 2022.10.4., 2025.6.16.>

3. 본 대학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신설 2025.6.16.>

② 총장은 교육·연구진흥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구 외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위원은 총장과 부총장, 학사1부총장, 학사2부총장,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으로 보임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 2017.9.15., 2018.9.10., 2020.2.17., 2020.8.24., 2022.10.4., 2025.6.16.>

제5조(총장) ① 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교육혁신본부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

2017.1.1., 2017.9.15., 2022.10.4.>

③ 외국인 교원이 총장이 되는 경우 그 총장의 직무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5조의2(부총장) 부총장은 대학 학사 및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5조의3(학사1부총장) ① 학사1부총장은 교육혁신본부, 입학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②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1부총장보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16.]

제5조의4(학사2부총장) ① 학사2부총장은 교무처,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② 총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2부총장보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16.]

제5조의5(산학협력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은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5조의6(대외부총장) 대외부총장은 대외 홍보 및 협력 업무와 우송기술원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6조(행정부서) ① 본 대학의 행정부서 중 본부에는 본부장을, 처에는 처장을, 단에는 단장을 둔다. <개정 2022.10.4.>

② 본부장과 처장,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0.4.>

③ 처 또는 단에는 부처장, 실장 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 처장 및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④ 행정부서의 하부조직으로 실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6조의2(교무기획본부장) 삭제 <2018.3.5.>

제6조의3(입학학생복지본부장) 삭제 <2018.3.5.>

제6조의3(입학학생본부장) <신설 2022.2.28.> , 삭제 <2022.10.4.>

제6조의4(교육혁신본부) ① 교육혁신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 부서 및 학과 발전 계획 수립, 내부감사, 대학 정보공시제도 총괄관리, 교육통계 관리, 학칙 및 제규정 제·개정, 제위원회관리, 교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학생정원조정, 표준분류체계 관리,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업무, 대학평가 관련 업무, 만족도 조사 업무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 <개정 2025.6.16.>

2. 학생(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에 대한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동아리(전공 및 창업분야 제외) 활동 지원업무 등, 학생장학 관련 제반 업무.

3. 학생 취업관리에 관한 업무, 취업통계조사, 취업률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학생경력 개발 및 운영, 벤처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4.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

② 교육혁신본부에는 기획실, 성과관리혁신실, 학생복지팀, 장학팀, 취업팀을 둔다.

[본조신설 2022.10.4.]

제7조(교무처) ① 교무처는 학사과정 전반의 교무 및 학적에 관한 업무(외국인 학생의 교무·학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와 교양교육과정 운영, 본 대학의 학술진흥과 연구의 지원, 우송요람 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1., 2018.1.1., 2025.6.16.>

② 교무처에 교무팀, 교육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6.7.1., 2016.8.1., 2020.2.17.>

③ 삭제

제8조(학생복지처) 삭제 <2022.10.4.>

제9조(입학처) ① 입학처는 학생(외국인 학생을 포함한다.) 선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입학시험 관리, 입시결과 평가·분석업무, 대학 홍보계획 수립·운영, 대학 홈페이지 관리, 자유학기제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8.1., 2017.1.1>

② 입학처에 입학팀과 입학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6.8.1., 2018.3.5., 2022.10.4.>

제9조의2(취업처) 삭제 <2022.10.4.>

제10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관·산·학 협력을 촉진하고 본 대학의 학술진흥과 연구의 지원 및 관·산·학 관련 업무,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주요사업비에 대한 예산관리, 발전기금 조성, 학교기업 발굴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정보팀과 운영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7.1.1., 2018.3.5., 2022.2.28.>

③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8.>

제11조(총무처) ① 총무처는 문서관리 및 보안비밀관리, 행정편제 및 사무분장의 조정, 교원(초빙·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인사관리, 직원의 인사관리, 교원 및 직원의 보직발령, 보수와 이와 관련된 업무, 자금관리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예산집행에 관한 업무, 학교기업의 설립, 시설물 증·개축 및 개보수에 관한 업무, 물품구매 및 관리,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및 유지관리, 서무업무, 시설물·차량유지관리 및 기숙사 관리 업무, 교육 및 연구공간 조정업무 및 다른 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17.9.15., 2018.1.1., 2025.6.16.>

② 총무처에 총무과, 구매관리과를 둔다. 단, 총무처장의 궐위 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15., 2020.2.17., 2022.10.4.>

③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을 두며, 구매관리과에는 구매관리팀과 안전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8.9.10., 2020.2.17., 2022.5.2., 2022.10.4.>

제11조의2(관리처) 삭제 <2017.9.15.>

제12조(기획처) 삭제 <2022.10.4.>

제12조의2(발전기획단) 삭제 <2020.8.24.>

제12조의3(스마트팩토리스쿨) 삭제 <2025.2.24.>

제12조의4(K-마이스터스쿨) ① K-마이스터스쿨은 K-푸드조리과, K-뷰티학부, K-베이커리학부에 대한 학사운영안 수립 및 시행, 입시홍보·전략수립 및 시행, 학생 취업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1.8.9.> <개정 2025.2.24.>

② K-마이스터스쿨에는 학장을 두고,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K-마이스터스쿨에는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12조의5(스마트철도스쿨) 삭제 <2025.2.24.>

제13조(한시조직) 총장은 특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14조(위원회) ① 총장은 중요 학사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별 기능·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우송도서관) ①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우송도서관을 둔다.

② 우송도서관에는 관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부속·부속교육기관) ① 본 대학에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부속·부속교육기관과 부설 연구기관을 둔다. <개정 2025.6.16.>

② 각 부속·부속교육기관은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대학본부 내 행정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부서별 소관 부속·부속교육기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25.2.24.> <개정 2025.6.16.>

③ 본 대학에 두는 부속·부속교육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의 종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2.24., 2025.6.16.>

제3장 보직 및 임기

제18조(보직) ① 삭제 <2025.6.16.>

② 삭제 <2022.10.4.>

③ 학사1부총장보, 학사2부총장보, 학장, 본부장, 처장(총무처장을 제외한다), 단장, 실장 및 부속기관의 장은 본 대학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9.15., 2021.2.22., 2022.10.4., 2025.6.16.>

④ 센터장 및 부속기관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⑤ 총무처장 및 팀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2.10.4.>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속하지 않는 다른 보직자는 총장이 임면한다.

제19조(보직자의 연임) 삭제 <2022.10.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이 규정은 2013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및 제8조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교무처)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이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특례) 이 규정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설 2025.2.24.> <개정 2025.6.16.>

행정부서별 부속·부속교육기관 업무지원

행정부서명	부속·부속교육기관명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양교육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기획실	IR센터, ESG센터
학생복지·장학팀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기숙사, 한국어교육센터
입학처	Global협력센터
취업팀	창업교육센터, 취업지원센터
산학협력단	Industry 4.0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산학협력정보센터, RISE센터
총무처	우송스포츠센터, 보건실, 장애학생지원센터